

「공중화장실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 초안에 대한 검토서

※ 담당자 : 서울도시철도공사 법무처 도금수 (02-6311-2037)

개정령 초안	검 토 의 견	
	수 정 안	수 정 사 유
<p>제7조(공중화장실의 관리 기준)</p> <p>3. 청소 등 공중화장실 관리는 남성화장실은 남성이, 여성화장실은 여성이 하도록 하되 부득이 남성화장실을 <u>여성</u>이 관리를 할 경우 청소 등을 위하여 출입시는 화장실 입구에 <u>청소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이용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</u></p>	<p>제7조(공중화장실의 관리 기준)</p> <p>3. 청소 등 공중화장실 관리는 남성화장실은 남성이, 여성화장실은 여성이 하도록 하되 부득이 남성화장실을 <u>여성</u>이 청소 등 관리를 하는 경우와 <u>남성이 여성화장실 시설물 보수를 하기 위해 출입</u>시는 화장실 입구에 <u>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이용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</u></p>	<p>○ 공중화장실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로 <u>고장 발생 비율이 매우 높고, 현재 인력여건상 여성기술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바</u>, 고장발생시 보수업무를 위하여 여성화장실에 남성이 출입할 수 있도록 개정 필요</p>

<추가 개정건의 사항>

개정필요 조문 (현행)	개정건의 의견	
	개 정 안	개정필요 사유
	<해당사항 없음>	